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76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중 “주민 200인”을 “주민 10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개정 (제2조)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임무) (생략)	제2조(임무) (현행과 같음)
제3조(위촉) (생략)	제3조(위촉)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 해제) (생략)	제4조(위촉 해제) (현행과 같음)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은 사람 2. (생략) 3. (생략)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받은 사람</u>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 (생략)	제6조(운영) (현행과 같음)
제7조(예우 및 보상) (생략)	제7조(예우 및 보상)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u>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u>	<u>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과제100선」 책자의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상위법령에서 폐지된 규정이 있는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함양을 통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 사업
4.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중구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구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함양을 통해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1~3조)

나. 창의·인성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차별금지의 규정(안 제4조)

다. 창의·인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 사업의 범위 및 지원사항

(안 제5조~6조)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79호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육제한 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중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제4조 제목 “사육허가의 절차등”을 “사육허가의 절차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8조에 따라 <u>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 ----.</p>
<p>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u>축산법</u>」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 -----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 -----.</p>
<p><신 설></p>	<p>제2조의2(사육제한 구역 지정 및 변경 · 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u>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중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u>가축사육제한구역을</u></p>

현행	개정안
<p>제3조(사육허가) <u>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공공단체·학교·의료법인·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진료·인공수정·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u>가축인공수정 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공</u></p>	<p><u>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u> 2. <u>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u> 3. <u>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u> 4. <u>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u> 5.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u> <p>제3조(사육허가) <u>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u>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u></p>

현행	개정안
<p>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p> <p>2. 「<u>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p> <p><u><신 설></u></p> <p>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5조 (생략)</p> <p>제6조 (생략)</p> <p>제7조 (생략)</p>	<p>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p> <p>2. 「<u>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p> <p>3. 「<u>동물보호법</u>」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p> <p>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 (현행과 같음)</p> <p>제6조 (현행과 같음)</p> <p>제7조 (현행과 같음)</p>

가축사육허가증

제 호

1. 성명 : (한자) 생년월일
2. 사육장 소재지 :
3. 허가기간 : 부터 까지
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

구분 축종	축사			사육두수		
	부지면적	동수	건물 총면적	성축	자축	계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_____.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2014.03.25.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고시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문구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고시 절차를 신설(안 제2조의2)
- 나.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상위법에 따른 가축 정의를 적용하지 않고 「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범위를 적용하여 본 취지와 맞지 않아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정의로 개정(안 제2조)
- 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따른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 범위 신설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시설을 사육허가 시설로 명시 개정(안 제3조제3호)
- 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내용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자활 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 위원을 2/3 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청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

으로 선출한다.

-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 ⑥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소위원회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2/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복지기획팀장, 방문보건팀장, 실무 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이하“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내외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동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 ⑥ 공무원인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⑦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 ⑧ 동 협의체는 동 업무추진에 지문 및 심의를 위해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⑩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지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회의결과를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5년 7월 1일「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주요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용어 전반 재정립(안 제1조 등)
-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개정(안 제2조)
-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조항 개정·신설(안 제3·4조)
- 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마. 위원장 연임제한 조항 신설(안 제8조제1항)
-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0조)
- 사.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조항 신설(안 제11조제2항)
- 아.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조항 신설(안 제12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81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건전한 노후생활 지원) 구청장은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건전한 노후생활 지원) 구</u> <u>청장은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u> <u>지원을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u> <u>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u> <u>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u> <u>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u> <u>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예방교육</u> <u>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u>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최근 60대 이상 노인의 성범죄 비율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사회가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들어서는 과도기인 점을 감안 할 때, 어르신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에게도 성폭력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82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폐지
(2003.12.31.)

- 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제19조(기금의 재원),
제20조(기금의 용도), 제21조(기금의 운영·관리)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 폐지
(2004.6.29.)

- 제8조(기금의 운영·관리),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기금운영
심의회),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2. 주요내용

상위 법령 근거가 삭제되어 기금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83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제5항 중 “3년”을 “5년”으로, “두 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 · 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탁운영)</p> <p>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⑤ 위탁 운영기간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u>3년</u>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u>두 차례</u>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8조(위탁운영)</p> <p>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공개모집을 통하여</u>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⑤ ----- ----- -----<u>5년</u> ----- ----- -----<u>한 차례</u> ----- ----- ----- -----.</p>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5조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여 장애인 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함 (안 제8조)

나. 계약 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함 (안 제8조)

다. 기존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3.3.8.~2016.3.7. 로 만료가 되는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주
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 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
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84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내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중구”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문 판매대 등”을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 판매대 등”이라 한다)”로 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며,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게시판, 구정소식지, 구보게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를 “게시판, 구정 소식지, 구보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산청”을 “제4조에 따른 계약 산청”으로 하고, “장애인 등”을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를 “방법은 해당”으로 하고, “규정에 의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지 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용의 청사내 신문판매대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표]

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순위

순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 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 자를 제외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 자를 제외한 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신 · 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 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 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중구"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 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 라 한다)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규 정한 자)및 65세 이상노인인 생활 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의 모 또 는 부, 순국선열유족(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p>	<p>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 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 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 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 모가족 지원법」 제15조, 「독립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하여 관리 하는 공공용의 청사 내에 신문·복 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 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 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 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 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의 범위) ①이 조례의 적 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적용의 범위) ① ----- -----.</p>

현 행	개 정 안
<p>1. <u>중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u></p> <p>2. (생략)</p> <p>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용의 청사 내에 <u>신문판매대</u>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u>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u>.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u>한한다</u>.</p> <p>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장은 <u>제2조의 규정에 의한</u>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u>게시판, 구정소식지, 구보게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u> 사전공고하여야 한다.</p>	<p>1. <u>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 <u>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신문 판매대 등"이라 한다)</u>를 -- <u>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 ----- <u>한정한다</u>.</p> <p>제3조(사전공고) ----- ----- -----<u>제2조에 따른</u> ----- ----- ----- <u>게시판, 구정 소식지, 구보 등의 방법으로</u> ----- -----.</p>
<p>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u>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u>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p>	<p>제5조(우선계약) ----- ----- <u>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u> -----</p>

현 행	개 정 안
<p>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u>장애인 등 2인 이상</u>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p> <p>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u>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u> 계약을 체결한 자는 <u>신문판매대등</u>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로서 계약자가직접 운영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p>	<p>----- ----- <u>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u>----- ----- ----- ----- -----.</p> <p>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u>제5조에 따라</u> ----- ----- ----- ----- ----- ----- ----- ----- -----.</p>
<p>제7조(사용료) ----- ----- <u>방법에 관하여는 당해</u> ----- <u>규정에 의한다.</u></p>	<p>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u>방법은 해당</u>----- ----- <u>규정에 따른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계약의 해지) ---- <u>각 호의 1</u> ----- -----.</p> <p>1. ~ 4. (생략)</p>	<p>제8조(계약의 해지) ---- <u>각 호의</u> <u>어느 하나에</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 ----- -- <u>1회에 한하여</u> ----- -----.</p>	<p>제9조(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 ----- ---- <u>한 차례만</u> ----- -----.</p>

현 행

[별표]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때의 우선순위

순 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 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 족
1	장애인등급 1~2급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2	장애인등급 3~4급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3	장애인등급 5~6급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개

[별표]

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

순 위	장 애 인	노인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권 예우를 반영하여 우선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된 국가 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항 및 법명의 개정
- 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1호 서식 개정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법령명 및 조항 수정
 - 『장애인복지법』제38조를 제42조로함. (안 제1조)
 - 『모·부자복지법』제15조를『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로 함. (안 제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를『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2로 함. (안 제1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권을 명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1호 서식에서 주민등록 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개정. (안 제4조 별지1호 서식)
- 라. 제1조(목적)에서 우선권 대상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 개정 (안 제5조 별표)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정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85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⑥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운영하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 위치란 중 “중구 신당3동 844-5”를 “중구 동호로5길 19(신당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신 설></p> <p>제15조제3항(수탁자의 의무)</p> <p>① ~ ② 생략</p> <p>③ <u>수탁자가 수탁기간 중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또는 사용개시 전에 중구에 기부채납 되어야 한다.</u></p> <p>④ ~ ⑤ 생략</p> <p>별표1</p> <p>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p>	<p>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p> <p>① ~ ④ 생략</p> <p>⑤ <u>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u></p> <p>⑥ <u>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u></p> <p>제15조(수탁자의 의무)</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운영하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별표1</p> <p>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시 설 명</th> <th style="width: 33%;">기 능</th> <th style="width: 33%;">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중구청소년수련관</td> <td>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위한 시설</td> <td>중구 신당3동 844-5</td> </tr> </tbody> </table>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위한 시설	중구 신당3동 844-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시 설 명</th> <th style="width: 33%;">기 능</th> <th style="width: 33%;">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중구청소년수련관</td> <td>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위한 시설</td> <td>중구 동호로5길 19(신당동)</td> </tr> </tbody> </table>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위한 시설	중구 동호로5길 19(신당동)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위한 시설	중구 신당3동 844-5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위한 시설	중구 동호로5길 19(신당동)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패영향평가, 등록규제 검토 및 도로명주소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11조)

나.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수탁자의 기부채납 명시 규정 삭제
(안 제15조 제3항)

- 제15조 제3항은 '수탁자가 수탁기간 중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또는 사용개시 전에 증구에 기부채납 되어야 한다.' 라고 하여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수탁자의 기부채납 의무 규정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다. 청소년수련관 위치 새주소로 수정 [동호로5길 19(신당동)] (안 별표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86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의 “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센터종사자 인건비</u> 3. ~ 4. (생 략) 	<p>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u> 3.~ 4. (현행과 같음)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처우개선비를 명문화하여
시비 지원 종사자와 구비 지원종사자 간 인건비 차이를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설 (안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87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로 같은 조 제2호 중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별표 중 뒷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금치산자</u> 2. <u>한정치산자</u>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p>[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관련) (뒷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발급번호 성 명 <u>주민등록번호</u> 유효기간:</p> <p>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p> <p>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p> </div>	<p>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피성년후견인</u> 2. <u>피한정후견인</u> 3. (현행과 같음) <p>[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관련) (뒷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발급번호 성 명 <u>생년월일</u> 유효기간:</p> <p>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p> <p>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p> </div>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안 제3조)

나.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 (별표)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88호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음식점 및 나목의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3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에 관하여 적용한다”를 “에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36조제3호”를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를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다량배출사업자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하며, 구청장은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중

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일시·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생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분이 용이하도록 노란색으로 한다.”를 “구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을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로 하고, “수거용기에 대하여는”은 “수거용기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를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은 “위반한 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을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도 해당하며,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위탁처리계약서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

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제16조제1항제5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를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2와 같다.”를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 등에 관하여는”은 “사항 등은”으로 하며, “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를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u>「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u></p> <p><u>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u></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u>「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및 나목의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u></p> <p>4. ~ 6. (생략)</p>	<p>4. ~ 6.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폐기물관리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u>에 관하여 적용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 <u>법</u> -----</p> <p>-----</p> <p>-----</p> <p>-----<u>에 적용한다.</u></p>
<p>제5조(구청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u></p> <p>② <u>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u></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② (생략)</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③ 구청장은 <u>예산의 범위에서</u>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 <u>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u> ----- ----- -----</p>
<p>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u>감량의무이행계획서</u>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u>감량의무이행계획서</u>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p>	<p>④ ----- ----- ----- <u>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u>----- ----- <u>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u>----- -----</p>
<p>⑤ (생략)</p> <p>1. (생략)</p> <p>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u>제36조제3호</u>)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금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p> <p>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u>제2조</u>)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p>	<p>⑤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제36조제1항제3호</u> --- _----- ----- -----</p> <p>3. ----- ----- ----- ----- <u>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u>----- -----</p>

현행	개정안
<p>화, 계획 구매 홍보 등</p> <p>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u>감량의무이행계획서</u>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p> <p>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u>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u>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⑥ ----- ----- <u>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u> ----- ----- -----</p> <p>⑦ ----- -----<u>다량배출사업자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u> -----.</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u>법 제 14조제4항</u>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p> <p>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u>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u>제 14조제5항 및 제6항</u> ----- ----- ----- ----- -----</p> <p>② ----- ----- ----- ----- ----- <u>별표 1과 같이 정한다.</u></p>

현행	개정안
<p>③ ~ ④ (생략)</p> <p>⑤ <u>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u></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u>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전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u></p> <p>② <u>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배출시간·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③ <u>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u></p> <p>1. ~ 2. (생략)</p> <p>④ <u>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u></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하며, <u>구청장은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u></p> <p>② <u>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일시·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③ ----- <u>생활폐기물 배출자</u>-----</p> <p>1. ~ 2. (현행과 같음)</p> <p>④ ----- <u>생활폐기물</u>-----</p>

현행	개정안
<p>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 ----- ----- -----</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생략)</p> <p>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u>구분이 용이하도록 노란색으로 한다.</u></p> <p>③ ~ ④ (생략)</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구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u>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u>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u>수거용기에 대하여는</u>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u>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u>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u>----- ----- ----- <u>수거용기는</u>----- ----- -----</p> <p>② ----- ----- <u>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u>----- ----- -----</p>

현행	개정안
<p>설치 또는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운영주체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u>위반한 자에 대하여는</u> 법 제 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 ----- ----- -----.</p> <p>③ ----- ----- ----- ----- -----<u>위반한 자에게</u> ----- -----</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p> <p>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u>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u>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 ⑥ (생략)</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u> -----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생략)</p>	<p>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u>생활폐기물 배출자</u>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생활폐기물 배출자</u>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 <u>생활폐기물배출자</u> ----- ----- ----- ----- <u>생활폐기물배출자</u> ----- ----- -----</p>
<p>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략)</p> <p>② <u>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u></p> <p>1. <u>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u></p>	<p>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 ----- ----- -----</u></p> <p>1. <u>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p>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생략)</p> <p>1. <u>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u></p> <p>2. <u>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u>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p> <p>3. <u>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u></p>	<p>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p> <p>1. <u>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이하 “공동처리” 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u></p> <p>2. <u>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u> ----- ----- -----.</p> <p>3. <u>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u>-----</p>

현행	개정안
<p>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p> <p>4. <u>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u>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 ----- -----.</p> <p>4. <u>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도 해당하며,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5. ----- ----- ----- <u>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위탁처리계약서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u></p>

현행	개정안
<p>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p> <p>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p> <p>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p> <p>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p> <p><신설></p>	<p>명서를 -----</p> <p>-----</p> <p>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p> <p>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 변경된 경우</p> <p>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p> <p><삭제></p> <p>마.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p>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시에만 해당) 등 감량 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p>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p> <p>-----</p> <p>-----</p> <p>-----</p> <p>1. -----</p> <p>-----</p> <p>-----</p> <p>-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p> <p>-----</p>

현행	개정안
<p>처리 여부</p> <p>2. 폐기물처리업자, <u>재활용신고자</u>,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p>	<p>2. ----- <u>폐기물처리 신고자</u> ----- ----- ----- -----</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u>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u>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 ----- ----- -----<u>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u> ----- ----</p>
<p>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p> <p>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u>별표2와 같다.</u></p> <p>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u>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u></p>	<p>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p> <p>① ----- <u>영 제38조의4에 따른다.</u></p> <p>② ----- -----<u>사항 등은</u>-----<u>법 시행규칙</u>----- <u>「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u></p>
<p>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u>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0조(시행규칙) ----- <u>시행에 관한 사항은</u> ----- -----.</p>

<신 설>

<별표 1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

구분 단위	일반가정(단독·공동)			
	2015년 ²⁾		2017년 ³⁾	
	ℓ	kg	ℓ	kg
1	70	100	100	130
2	140	200	200	260
3	210	300	300	390
5	350	500	500	650
10	700	1,000	1,000	1,300
20	1,400	2,000	2,000	2,600
40	2,800	4,000	4,000	5,200
60	4,200	6,000	6,000	7,800
120	8,400	12,000	12,000	15,600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음식점 중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 2) 2015년 : 2015년 11월 1일부터

3) 2017년 : 2017년 1월 1일부터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100kg 이상

현행

개정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또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 사용 배출. 일반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 봉투를 사용 배출 -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이쭉시개·비닐·쇠붙이·병뚜껑·유리조각·플라스틱·나무젓가락·휴지·조개껍질·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합성세제비누잉크 등 화학물질 투입 금지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별표 2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	품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는 최대한 고여 있지 않도록 - 이쭉시개·비닐·나무젓가락·휴지·조개껍질·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합성세제비누잉크 등 화학물질 투입 금지 - 소금성분이 많은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범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삭 제>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삭 제>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⑧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지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 ⑬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 ⑭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⑮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⑯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삭 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활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 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 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 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삭 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 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총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을 담고 있는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2015년 10월 1일자로 인상된 가격으로 총량제 봉투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혼선을 막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인상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수료인상 시점을 2015년 11월 1일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안으로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안 제9조제2항)
- 나.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 반영
- 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령의 조문을 준용 (안 제19조제1항)
 -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 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 관련 환경부 조례 준칙(안) 반영(안 제9조제5항)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및 제5항 중 “제③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채촉”을 “해촉”으로 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50조에 따른다.
-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3(구성 및 임기)</p> <p>① ~ ③ (생략)</p> <p>1. <u>주민생활지원국장</u></p> <p>2. ~ 4. (생략)</p> <p>④ <u>제③항</u> 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u>제③항</u>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u>채촉된 것으로 본다.</u></p> <p>⑤ <u>제③항</u>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회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5조의3(구성 및 임기)</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1. <u>복지환경국장</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u> ----- ----- ----- <u>제3항</u> ----- -----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 ----- ----- <u>해촉</u>-----.</p> <p>⑤ <u>제3항</u>----- ----- ----- -----.</p>
<p>제5조의4(운영 및 직무)</p> <p>① ~ ④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의4(운영 및 직무)</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u></p> <p>⑥ <u>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u></p> <p>1. <u>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u></p>

현행	개정안
	<p>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p> <p>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p> <p>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p> <p>5.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활용한 경우</p> <p>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p> <p>①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p>	<p>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p> <p>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50조에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p> <p>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p> <p>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p>	<p>③ <u>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다.</p> <p>제12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p> <p>·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p> <p>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p> <p>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p> <p>제13조 (생략)</p>	<p><u>〈삭 제〉</u></p> <p>제13조 (현행과 같음)</p>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가. 위반일시 :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구청장 (인)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당초납부기일		

〈삭 제〉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_____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현행

개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소 :

성명 :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차액	비고

〈삭제〉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구청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 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삭 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관할법원)

발 신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 와 관련입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 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⑥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현행

개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수납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 서 번호	③ 과태료 처분 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 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 과태 료납 부일	이의제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명	⑨ 주소		⑪ 이의 제기 일	⑫ 법원 통보 일

〈삭 제〉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존 조례상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같은 법 제5조의 원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기준으로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안 제7조)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했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게 기재되었거나, 중복 기재하여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또는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 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비 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4 제1호가목 1) 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u>-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u> <u>-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u> <u>-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u> 3.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소 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충전사업소 대지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고압가스 일반제조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구분	허가 기준	비고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제곱미터 이상 이어야하며, 관리사무실은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하여야 한다. 4. 판매사업소 및 영업소 설치위치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1층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압가스 판매는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9 제1호가목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단 용기보관실 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주)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주택법」 「영유아보육법」 그 밖에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제4조 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 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제6조 제2항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등록,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제5조 또는 제8조 ----- -----.</p>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2015.7.29)으로 인한 조항변경

현행		
[별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분	허가 기준	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1호 관련 별표3 제1호가목 1) 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신설 > 3.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소 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충전사업소 대지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고압가스일반제조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		
[별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분	허가 기준	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3 제1호가목 1) 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접하는 도로의 폭은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접하는 도로의 폭은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한다. 3.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소 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충전사업소 대지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고압가스일반제조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허 가 기 준	비고
고압가스 냉동 제조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제곱미터 이상 이어야하며, 관리사무실은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하여야 한다. 4. 판매사업소 및 영업소 설치위치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1층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압가스 판매는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9 제1호(가목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단 용기보관실 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주)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태생계 보전에 관한 법률」, 「주택법」, 「영유아보육법」 그 밖에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구분	허 가 기 준	비고
고압가스 냉동 제조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제곱미터 이상 이어야하며, 관리사무실은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하여야 한다. 4. 판매사업소 및 영업소 설치위치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1층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압가스 판매는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9 제1호(가목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단 용기보관실 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주)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태생계 보전에 관한 법률」, 「주택법」, 「영유아보육법」 그 밖에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으로 관련 법조항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관련조항을 개정하고
- 나.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에서 LPG충전시설의 과도한 안전거리 개선요구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 반영

2.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조례 위임근거 조항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안 제1조~2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허가의 기준 위임규정 개정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 강화조건 완화를 위한 별표개정
(안 제3조 별표)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제1호가목 1) 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단, 아래의 강화조건이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한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91호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80조제3항”을 “법 제80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제9조에 따른
수수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p> <p>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p> <p>② ----- ----- ----- ----- ----- ----- ----- 법 제80조제4항에 ----- ----- ----- -----</p>
<p>제11조(수수료의 가산금)</p> <p><u>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u></p>	<p>제11조 <삭제></p>
<p>제12조(수수료의 강제징수)</p> <p><u>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u></p>	<p>제12조(수수료의 강제징수)</p> <p><u>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u></p>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관련 법조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조례 위임근거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 「하수도법」의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이 “제80조제3항”에서 “제80조제4항”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안 제4조제2항)

나.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 정비

- 「하수도법」에 수수료의 가산금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안 제11조)하고, 수수료의 가산금 관련 문구를 삭제(안 제12조)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 ⑥ 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이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류 등 재심의를 필요한 경우 또는 소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⑤(생략) <u><신 설></u>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⑤(현행과 같음) <u>⑥ 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이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류 등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소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심의 처리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제24조제5항제9호”를 “제55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제3호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시장 내 시설 등

5. 신·재생에너지 설비(단,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영 제28조”를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로 하며, “법 제94조”를 “법 제72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별표3”을 “영 별표4”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3호”를 “법 제68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8조”를 “법 제61조”로 하고, “부령 제42조제1항제2호”를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설·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호에 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 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24조제5항제9호</u>에 따 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p> <p>2. ~ 3.(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 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55조제12호</u>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 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삭제></u></p> <p>2. ~ 3.(현행과 같음)</p> <p><u>4. 전통시장 내 시설 등</u></p> <p><u>5. 신·재생에너지 설비 (단,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 정한다.)</u></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u>도로법</u>」 (이하 “법“이라 한다) <u>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u></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u>점용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 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 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u>법 제38조 및 영 제28조</u>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u>법 제94조</u>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u>도 로법</u>」(이하 “법”이라 한다) <u>제61조 및 영 제54조</u>----- ----- ----- ----- ----- ----- ----- <u>법 제72조</u> -----</p>

현행	개정안
	-----.
<p>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u>영 별표3</u>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이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p>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 ----- ----- ----- -----<u>영 별표4</u> -----.</p> <p><u>< 삭제 ></u></p>

현행	개정안
<p>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p>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p>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p>

현행	개정안
<p>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u>법 제42조제3호</u>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p> <p>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u>법 제84조</u>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① ----- ----- -----, <u>법 제68조제3호</u> ----- -----.</p> <p>② <u>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u>「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u>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p> <p>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u>법 제38조</u>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u>부령제42조제1항제2호</u>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u>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p>	<p>③ ----- -----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u> -----.</p> <p>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u>법 제61조</u> ----- <u>「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u> -----.</p> <p>② <u>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따른다.</u></p>

현행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6. <생략>				
7.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10. <생략>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을 곱한 금액

※비고

- 1.부터 8.까지 (생략)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6. <삭제>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8~9. <삭제>, 10<현행유지>				
3.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 1.부터 8.까지 삭제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2014.07.15.)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2014.05.14 및 2014.10.20.)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위임근거없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관련규정 삭제
- 나. 점용허가대상 점용물 및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별표) 등 상위법과 중복되지 않게 조례로 정할 사항만 규정
- 다. 10면 이상(0.02)과 그 외(0.016)로 구분된 차량진출입로 점용요율 (0.02)일원화
- 라.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노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점용요율 개정
- 마. 점용료 반환 규정 신설 및 가산금 산정이자 적용근거 규정 정비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94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제한 경우”를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 제2항 중 “주차료”를 “주차표”로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0조제2항 관련)

고지 번호	건축물 현황				비용납부 의무자			납부 금액	납부 일	무상 사용 기간	지정 주차장
	위치	건축 연면적	의무 면제 대수	허가 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 월일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차거부금지)</p> <p>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p> <p>1. (생략)</p> <p>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제한 경우</p> <p>3. ~ 7. (생략)</p> <p>8. <u>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u></p>	<p>제3조(주차거부금지)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제한 경우</p> <p>3. ~ 7. (현행과 같음)</p> <p>8. <삭 제></p>
<p>제3조의 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p>	<p>제3조의 2 <삭 제></p>
<p>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료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제21조(용자의 대상)</p> <p>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p> <p>2. 법 제19조2에 따라 <u>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u></p> <p>별지 제8호 서식</p> <table border="1" data-bbox="194 1444 667 1579"> <tr> <th colspan="3">비용납부 의무자</th> </tr> <tr> <td>주소</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td> </tr> </table>	비용납부 의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p>제21조(용자의 대상)</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19조제2항에</u>----- ----- -----</p> <p>별지 제8호 서식</p> <table border="1" data-bbox="855 1451 1334 1585"> <tr> <th colspan="3">비용납부 의무자</th> </tr> <tr> <td>주소</td>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r> </table>	비용납부 의무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비용납부 의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용납부 의무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의「조례 규제개선 과제 100선」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주차거부금지) 제8호 삭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공영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나. 제3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삭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차량 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다.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 란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95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른”을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	100	200	3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u>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u>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u>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u>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 <u>지역보건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 <u>지역보건법</u> 」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u>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되 당사</u>	<u><삭 제></u>

현행	개정안
<p><u>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u></p> <p><u>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u></p> <p>① <u>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다.</u></p> <p>② <u>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u></p> <p>③ <u>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u></p>	<p><u>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u></p> <p><u>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제6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u>제7조(강제징수)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u></p> <p><u>제8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현 행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등을 행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개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을 제외하고(같은 날에 2회 이상 위반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제3항에서 제5항이 삭제되었기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 (안 제5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게 기재하였거나, 중복 재기재하여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을 정비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관리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서식을 정비함. (안 제8조 및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